

제조물책임 관련 판례와 사례 (I)

글 · 강창경 연구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

1. 전기 채난(採暖)의자의 결함에 의한 화재 피해배상 요구 건

[사건개요]

청구인은 '96. 1. 3 피청구인이 제조한 전기 채난(採暖)의자 (모델명 : ○○○체어)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, '96. 3. 3 청구인 가족들이 외출한 상태에서 같은 날 15:30경 이 건 전기채난의자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아파트 내부 및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발생했음.

[당사자 주장]

1) 청구인 주장

피청구인이 제작한 전기채난의자의 결함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, 청구인의 재산상 피해액 금 53,000,000원의 50%인 금 26,500,000원을 피청구인이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.

2) 피청구인 주장

이 건 전기채난의자는 공업진흥청의 형식승인 및 품질기준 등을 득하여 판매된 제품으로 결함은 있을 수 없는 바, 청구인이 전원코드를 뽑지 않고 사용하는 등의 사용자 과실로 인한 화재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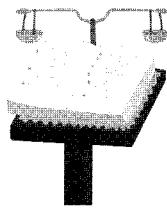
[조정결정사항]

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6.6.7까지 금 4,823,000원을 지급한다.

[조정결정이유]

1) 시험검사 내용

이 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"○○소방서"의 진술에 의하면 화재당시 청구인의 아파트 내에 전원차단기(퓨우즈)가 차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, 전원코드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최초 발생지점이 '안방 벽체 전기콘센트와 전기채난의자간 전원코드의 배선'으로 보아 동 화재는 전기채난의자에서 발화되어 전원코드를 따라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,



그리고 이 건 화재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“○○경찰서 형사5계”에 따르면 이 건 전기채난의자는 화재현장에서 철골 뼈대만 남아 있을 정도로 아파트 내부에서 가장 심하게 탔고, 또한 불줄기가 이 건 전기채난의자로부터 시작하여 방바닥을 지나 벽을 타고 방 전체에 확산된 것으로 보아, 최초 발화지점이 전기채난의자인 것으로 보이며, 집안에 다른 전열기구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제품의 과열로 인하여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.

또한 청구인이 이 건 제품의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외출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동제품이 과열이 되었고, 또한 이 건 제품의 과열을 방지하는 장치인 자동온도 조절장치 및 과승방지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.

2) 결론

이 건 화재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, 화재현장을 직접 조사한 ‘소방’ 관계자와 ‘경찰’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하면, 이 건 화재의 원인은 아파트 내부에 다른 전열기구가 없었던 점, 화재현장에서 동제품이 가장 심하게 소실된 점, 최초 발화지점이 동제품으로부터 시작되어 아파트 내부에 확산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전기채난의자의 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.

그리고 청구인이 전열기구인 동제품의 주의사항을 소홀히 하여, 이 건 제품을 장시간 전원을

켜 놓은 상태에서 외출을 하여 동 제품이 과열되었고, 또한 이 건 제품의 과열을 방지하는 장치인 온도 과승 방지장치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함.

따라서 이 건 제품을 제조한 피청구인은 그 제품의 구조, 품질,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(期待可能)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, 이러한 안전성·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, 이러한 안전성·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, 피청구인은 이 건 전기채난의자의 제조사로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.

3) 피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

청구인이 이 건 화재로 입은 피해내역중 아파트 내부수리비용은 청구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화재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키로 하고, 가재도구 피해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정액법에 의거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결과 금 6,890,000원 정도로 추정되며,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과실 비율을 30:70으로 보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4,823,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.

[조정결과] 성립